

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745
------	-----

2005년 6월 30일  
보건사회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6월 10일, 서울특별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05년 6월 13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 
(2005년 6월 28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여성가족정책관 황인자)

가. 개정이유

-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“지방청소년위원회”가 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”로 명칭이 변경되고,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 당연직위원의 소속기구명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, 동 조례의 관련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조례의 제명을 “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조례”에서 “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”로 위원회명칭을 “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”에서 “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”로 변경하고,
- 당연직위원인 “서울지방검찰청청소년부 부부장검사,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방범부장”을 “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 부부장검사,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장”으로 변경(안 제3조3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김종식)

- 동 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과 관련법규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, 기존의 “청소년위원회”를 “청소년육성위원회”로 명칭을 변경하고, 청소년위원회 당연직위원의 소속기구명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임
- 따라서, 조례규칙심의회와 규제심사 등의 적법절차를 통하여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동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: 미구성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참석위원 전원일치)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....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